

	취·창업 지원 통합 운영위원회 규정	제정일	2019. 4. 1
		개정일	
		개정차수	차
		담당부서	DU일자리센터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효과적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구성된 취·창업 지원 통합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구성) ① 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산학취업처장, 창업지원단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취업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 3조 (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 4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취·창업 지원 활동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취·창업 지원 활동에 대한 중간 및 성과점검
3. 취·창업 지원 활동에 대한 결과평가 및 환류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5조 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6조 (회의록)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
제 7조 (사무관장) 위원회 제반 사무는 산학취업처 DU일자리센터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